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

##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송 순 효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-64
----------	---------

발의연월일: 2020년 6월 일

발 의 자: 송순효, 최동철, 김성한, 강선영  
김현희, 이충숙

### 1. 의결주문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  
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권과 관련  
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을  
목적으로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다는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  
함.(안 제1조)

나.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 절차 등을 규정함.(안 제2조)

다. 대표 검사위원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3조)

라. 검사위원의 해임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4조)

- 마. 감사위원의 직무에 대하여 규정함.(안 제5조)
- 바. 감사위원에 대한 제재를 규정함.(안 제6조)
- 사. 결산검사를 위한 자료제공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.(안 제7조)
- 아. 감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규정함.(안 제8조)
- 자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(안 제9조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
- 2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2조, 제83조, 제84조

나. 협조부서: 의회사무국

다. 입법예고: 2020. 6. 5. ~ 2020. 6. 9. 결과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·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정수·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수 및 선임방법) ①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검사위원”이라 한다)의 수는 5인으로 하되 서울특별시강서구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,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

강서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근무지를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.

1. 공인회계사, 세무사 또는 「은행법」의 적용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. 다만, 금융기관 중 단위농협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한다.
  2.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·결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
-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.
-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감사위원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된 경우,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⑥ 감사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3조(대표 감사위원) ① 선임된 감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.

② 대표 감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대표 감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감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.

제4조(검사위원의 해임)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 이 경우 의장은 자격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타 관할지역으로 거주지나 근무지를 변동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2.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
3. 질병,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
4.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 및 구세를 체납한 때

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
1.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
2.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
3.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

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.

④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.

제5조(검사위원의 직무)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, 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감사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감사위원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4조제3항에 따른 감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감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감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감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. 다만, 의회에서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.

제6조(감사위원회에 대한 제재) ① 감사위원회는 제4조제2항 제1호, 제2호,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.

② 의장은 감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.

제7조(자료제공 및 협조) 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감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, 사무보조원,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②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감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,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8조(실비보상) ① 구청장은 감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,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여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.

② 감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종료일까지 지급한다. 다만, 감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서식>

## 위 축 장

성 명:

(주 소)

귀하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○○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(인)



**□ 지방자치법**

제134조(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,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·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, 시·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·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□ 지방자치법 시행령**

제82조(결산 승인)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

제83조(감사위원의 선임) ① 법 제134조에 따른 감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 이상 10명 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은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·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.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.

제84조(결산 검사 사항) ① 감사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결산개요
2. 세입·세출의 결산
3. 재무제표
4. 성과보고서
5. 결산서의 첨부서류
6. 금고의 결산

② 감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에 대하여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그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감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지방의회는 결산심의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 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